

수원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단5310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이종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훈희, 황영준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홍성걸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9.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0.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2020. 4. 13. 접수 제49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은 D에게 수원지방법원 2019. 10. 8. 접수 제939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2019. 8. 22.부터 2019. 8. 23.까지 총 2,2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원고와 E는 2019. 8. 23. “원고가 2019. 8. 22., 2019. 8. 23. E에게 2,25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0. 22., 이자 연 6.5%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다. E의 대표자인 D는 2019. 8. 23. 원고에게 “주식회사 E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한 채무액 2,250,000,000원 및 그 지연이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연대보증책임 약속서를 작성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2. 28.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6. “E는 원고에게 2,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3. 26.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차전1385호).

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① D, F : 수원지방법원 2018. 10. 8. 접수 제97019호로 2018.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395,000,000원)
- ② 피고 B : 수원지방법원 2019. 10. 8. 접수 제93949호로 2019. 10. 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44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③ 피고 회사 : 수원지방법원 2020. 4. 13. 접수 제49283호로 2020. 4. 8.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D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 B은 D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고,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수익자 및 전득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가장채권이고, 원고와 D 사이의 연대보증약정은 허위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E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나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D, 원고 대표 K, 원고,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 이하 'L'이라 한다), L의 대표 N은 2019. 8. 22.부터 2019. 8. 23.까지 200,000,000원을 나누어 E가 D에게, D가 K에게, K이 N에게, N이 L에게, L이 원고에게, 원고가 다시 E에게 이체하는 식의 거래를 되풀이하면서 순환 이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E에게 합계 2,250,00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나,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K, L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의 합계도 2,256,750,000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 E와의 구매대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이고, E가 원고에게 물품 납품을 요청하면 원고가 L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물품가공을 발주하여 L이 E에게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의하더라도 L이 원고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원고가 이를 E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L이 E에게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와 원고 대표 K 등은 원고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마치 원고의 매출이 증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2. 33.경부터 2019. 7. 31.경까지 합계 10,343,143,02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73장을 발급하고, L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3. 9.경부터 2019. 9. 6.경까지 합계 10,175,899,66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6장을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인천지방법원 2021고합450호)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에 대하여 2,250,000,000원의 대여금 또는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D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D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희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P아파트 Q동

[도로명주소] 수원시 영통구 R

철근콘크리트 경사철재트러스아스팔트싱글지붕 20층아파트

지하1층 390.56㎡

1층 410.16㎡

2 내지 4층 각 406.80㎡

5 내지 20층 각 400.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수원시 영통구 O 대 35058.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6층 S호 철근콘크리트조 84.90㎡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5058.8분의 45.479. 끝.

